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47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위성곤 · 박정현 · 허영
서영교 · 윤준병 · 주철현
박희승 · 이개호 · 임오경
이해식 · 이춘석 · 정준호
송옥주 · 김한규 의원(14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 · 양(梁) · 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 · 무형의 유산들은 계승 · 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고 · 양 · 부 3개 성씨의 문중이 연합하여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부터 과세관청에서 재단의 법적 형태를 ‘종중(宗中)’에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아 재단의 재산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높여 부과함에 따라 2013년에 5,000여만원이었던 재산 관련 세금이 2025년에는 46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지방세 등의 감면 사항 등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단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257조의4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7조의4(삼성혈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기원으로서 탐라 개국 신화인 삼성혈(三姓穴)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단의 선정 방법과 그 밖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7조의4(삼성혈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기원으로서 탐라 개국 신화인 삼성혈(三姓穴)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재단의 선정 방법과 그 밖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u>